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
- 나.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 다.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5.2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5.3조 권리 및 의무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의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5.4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을 포함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협력 활동, 관련 기술적 및 과학적 문제를 확인하고 다루기 위한 전문가 대화 및 그 밖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사안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논의, 점검 및 검토한다.

3. 위원회는,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의 규정에 대한 모든 해석상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 당사국 간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때에 회합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직접 대면,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자 통신을 포함한 서신을 통하여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위원회는 그 결정의 서면기록을 유지한다.
5.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 및 양 당사국 간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자국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뉴질랜드의 경우, 일차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5.5조 위생 및 식물위생 접촉선

1. 제5.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경로로서의 기능을 한다.
2. 접촉선은 한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모든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되는 패턴의 불합치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취할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나의 제6항가호에 따라 통보가 세계무역기구에 제공됨과 동시에 접촉선은 그 당사국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하고 긴급한 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 보호 조치를 통보한다.
4.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촉선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접촉선은 모든 중대한 식품 안전 문제, 또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상태의 변화,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모든 중대한 구조적 변화, 또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체계상의 법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5.6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